

2021 마포구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마포구 옴부즈만의 연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발 간 사

옴부즈만 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2015. 1. 1부터 활동을 시작한 마포구 옴부즈만은 법률, 건축, 행정전문가로 구성되어 매주 1회 이상의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건축, 주택,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이해관계인과 대화와 중재를 통해 민원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이해당사자들과의 합동회의를 통해 서로 간의 감정적 대립으로 인한 갈등과 오해를 중재하고 이해시키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 및 계약 과정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청렴계약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 및 평가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2021년도 성과보고서는 국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활동한 마포구 「2기 옴부즈만」의 활동 내역이 담긴 보고서입니다. 매주 정례 회의와 현장 방문을 통해 고충민원 접수처리 사례, 공공사업에 대한 청렴계약 감시·평가 및 민원 관련 자문을 추진한 내용을 담았으며 이러한 마포구 옴부즈만의 활동으로 인해 마포구민들이 행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좀 더 국민과 가까워져 신뢰받는 마포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을 위해 옴부즈만과 같이 대화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민원 해결에 협조해 주신 구청 간부, 직원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일동

목 차

I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운영

1. 도입배경	8
2. 연혁	9
3. 옴부즈만 소개	12
4. 기능 및 권한	13

II

2021 운영 성과

1. 고충민원	20
2. 정례회의	30
3. 현장조사	35
4. 청렴계약 감시·평가	36
5. 청렴자문위원회 운영	39
6. 기타 활동	40

III

2021 주요사례

1. 고충민원 조사처리	44
2. 부서자문 조사처리	55
3. 청렴계약 감시·평가	64

IV

참고 자료

관계법령	72
------	----

I.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운영

1. 도입배경
2. 연혁
3. 옴부즈만 소개
4. 기능 및 권한



I.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운영

01 도입배경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 옴부즈만(Ombudsman)은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고충을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게 조사처리하기 위해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립하였고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국가청렴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의 자율적 · 자주적 해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를 통해 옴부즈만의 제도화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 마포구에서는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위법 ·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에 이바지하고자 2014년 옴부즈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 각 분야의 전문가를 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운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02 연혁



- 04. 24.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10. 16.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 11. 03. 옴부즈만 공개모집
- 11. 14. 옴부즈만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12. 16. 옴부즈만 사무실 설치
- 12. 19. 제192회 마포구의회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결



- 01. 01. 제1기 마포구 옴부즈만 3인 위촉
- 01. 09. 제1차 옴부즈만 정례회의 개최
- 10. 06. 서대문구 옴부즈만과 간담회 개최
- 10. 14. 지방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담회 참석



- 02. 29. 옴부즈만 협의회 구성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담회 참석
- 03. 07. 2015년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03. 07. 2015년 옴부즈만 운영성과 구의회 보고
- 08. 05. 안양시 주관 지방옴부즈만 협의회 간담회 참석
- 10. 13.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옴부즈만 업무협력 워크숍 참석
- 10. 21. 안양시 주관 지방옴부즈만 협의회 간담회 참석
- 12. 01. 마포구 주관 지방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 03. 03. 제5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옴부즈만 유공 표창
- 03. 06. 2016년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03. 06. 2017년 제1차 청렴자문위원회 참석
- 03. 07. 2016년 옴부즈만 운영성과 구의회 보고
- 04. 19. 2017년 제2차 청렴자문위원회 참석
- 05. 18.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콘퍼런스 참석
- 09. 27. 2017년 제3차 청렴자문위원회 참석
- 11. 30.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옴부즈만 업무협력 워크숍 참석
- 12. 13. 서울 서북 지역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 12. 22.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참석



- 03. 02.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성과 대시민 보고회 참석
- 03. 02. 2017년 옴부즈만 운영성과 구의회 개최
- 03. 05. 2017년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04. 27. 2018년 제1차 청렴자문위원회 참석
- 07. 13. 강원도 도민감사역량강화과정 출강(이수복 대표옴부즈만)
- 08. 06. 경북 상주시, 마포구 옴부즈만 운영 벤치마킹 방문
- 09. 12. 2018년 제2차 청렴자문위원회 참석
- 10. 11.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옴부즈만 워크숍 참석
- 10. 31. 서울 서북권(마포 · 서대문 · 은평) 옴부즈만 간담회 참석
- 11. 06. 옴부즈만 공개모집
- 11. 13. 옴부즈만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11. 28. 전국지방옴부즈만협의회 총회 참석
- 11. 30. 제226회 마포구의회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결
- 12. 26. 2018년 제3차 청렴자문위원회 참석
- 12. 31. 2018년 마포구 모범구민 구청장 표창 수상



- 01. 01. 제2기 옴부즈만 3인 위촉
- 01. 16. 2019년 제1차 청렴자문위원회 참석
- 02. 13. 구의장단 간담회
- 04. 17.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옴부즈만협의회 총회 참석
- 06. 12. 서울 서북3구(마포 · 서대문 · 은평) 옴부즈만 간담회 참석
- 07. 25. 2019년 제2차 청렴자문위원회 참석
- 09. 02.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포구 옴부즈만 벤치마킹 방문
- 09. 17. 정부합동민원센터 옴부즈만 간담회 참석
- 09. 25. 서울 서북3구(마포 · 서대문 · 은평)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 10. 13.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 고충민원 처리 실태평가심사위원 참여
- 10. 18. 마포구 전 · 현직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 10. 31. 국민권익위원회 전국 지방옴부즈만협의회 참석
- 11. 26. 광주광역시 북구청, 마포구 옴부즈만 제도 벤치마킹 방문



- 01. 21. 2020년 제1차 청렴자문위원회 참석
- 02. 27. 제8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유공 옴부즈만 표창
- 11. 05.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마포구 옴부즈만 벤치마킹 방문
- 11. 11. 2020년 제2차 청렴자문위원회 참석
- 11. 25.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마포구 옴부즈만 제도 벤치마킹 방문
- 12. 10. 제2기 마포구 옴부즈만 재위촉



- 02. 27. 국민권익의 날 기념 옴부즈만 분야 유공자 표창 수상(길기현 건축사)
- 03. 18. 2021년 제1회 국민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참석
- 05. 21.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5주년 기념행사 참석
- 06. 30. 청렴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03 옴부즈만 소개

■ 제 2기 마포구 옴부즈만

 박영철 대표 옴부즈만	· 前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 前 도화 · 용강상권활성화 단장, 용강 · 대흥동장 등
 길기현 옴부즈만	· 現 주)SLK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現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건축사회 기획위원장
 배수진 옴부즈만	· 現 법무법인 천지인 변호사 ·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조기조정위원

· 임기: 2019. 1. 1. ~ 2022. 12. 31. (1회 연임)

■ 구성

- 지 위 : 구청장 소속으로 독립적인 업무수행
- 임 기 :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위촉방식 : 공개모집 후 구의회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
- 운영방식 : 전원합의제

자격요건



-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할 사람
-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 건축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기술사 ·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04 기능 및 권한

■ 주요기능



■ 직무

- 고충민원의 조사 · 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상시적 청렴계약 감시 · 평가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 · 처리

직무관할



- 마포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마포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 마포구의 사무위탁기관(마포구의 위탁사무에 한함)

■ 주요 권한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고충민원을 조사할 때 직무와 관련하여 마포구 및 그 소속기관에 설명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구청장 소속하의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조사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마포구 및 그 소속기관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정의 의뢰도 할 수 있다.
-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옴부즈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이행실태 확인·점검

-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사항에 대해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 청렴계약 감시·평가

- 공공사업의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청렴계약 감시·평가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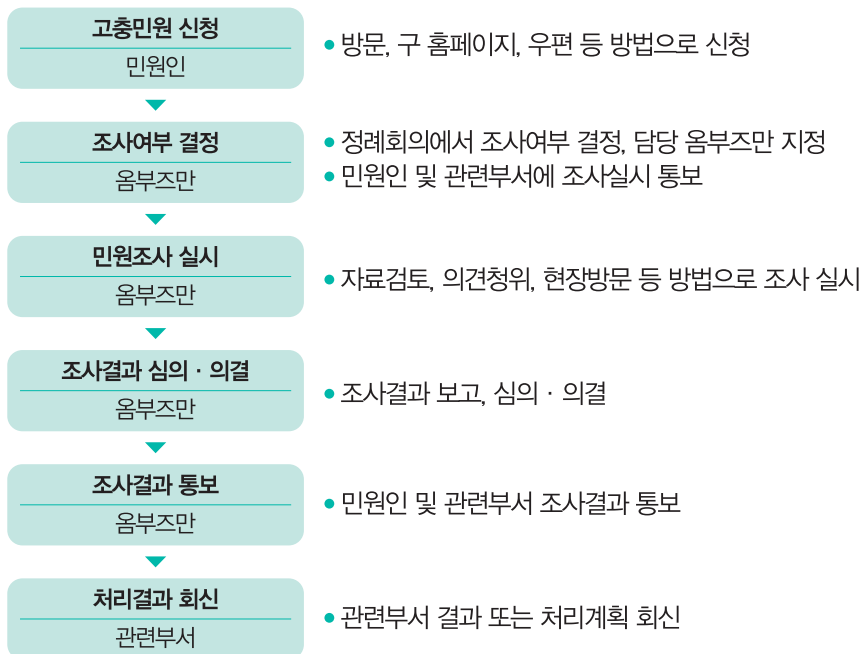


청렴계약 감시·평가에 따른 자료제출

- 관련 부서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제출해야 한다.
- 감시·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사전에 옴부즈만에게 심의자료와 일정을 제출해야 한다.
- 관련 부서장에게 감시·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고충민원 조사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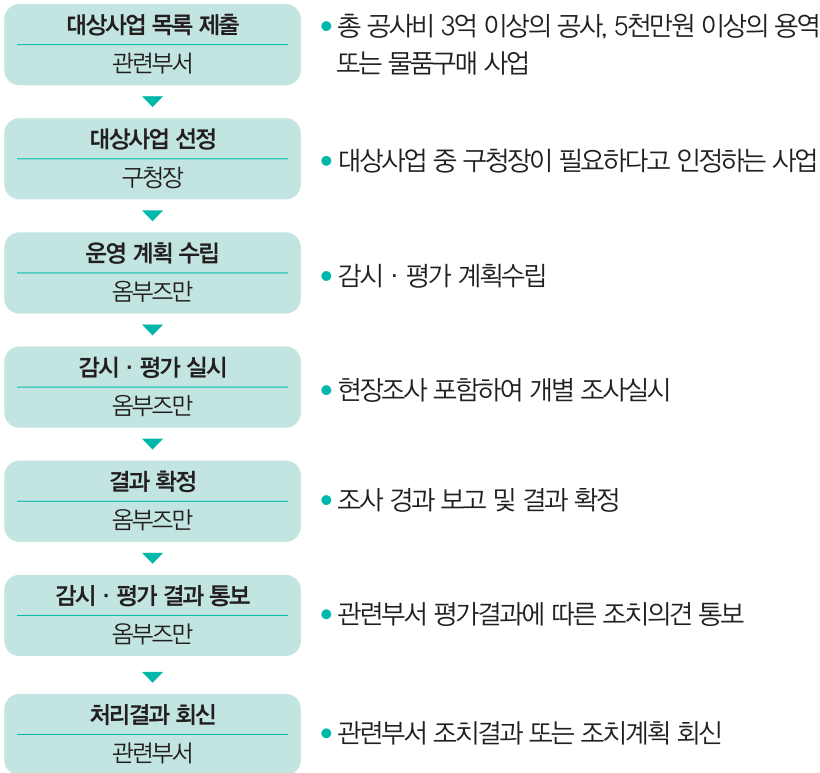
- 신청방법: 마포구 홈페이지 게시판, 방문, 우편 등
- 신청요건: 구민 30인 이상의 연서 필요
-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 연장)



고충민원 반려 등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구의회에 관한 사항
-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청렴계약 감시·평가



감시 · 평가 주요 검토사항



- 사업추진의 타당성,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요건의 적정성
- 계약체결 과정의 문제 여부
- 설계의 적합성(도면 부실 여부 등), 설계변경 여부 및 필요성
- 추진의 적정성(이유 없는 공사 지연 여부 등)
- 시공품질 점검 및 설계도면과 시공현장 비교

II.

2021

운영 성과

1. 고충민원 조사처리
 2. 정례회의 개최
 3. 현장조사 실시
 4. 청렴계약 감시 · 평가
 5. 청렴자문위원회 운영
 6. 기타 활동
-



II. 2021 운영성과

01 고충민원 조사처리

2021년 고충민원 접수 건수는 총 192건으로 주택건축분야 81건(42%), 교통건설분야 45건(24%)으로 전체 접수건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특히 ○○동의 건물 신축 반대 민원이 39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공사장 소음, 먼지 등 환경관련 민원도 꾸준히 접수되었다.

■ 민원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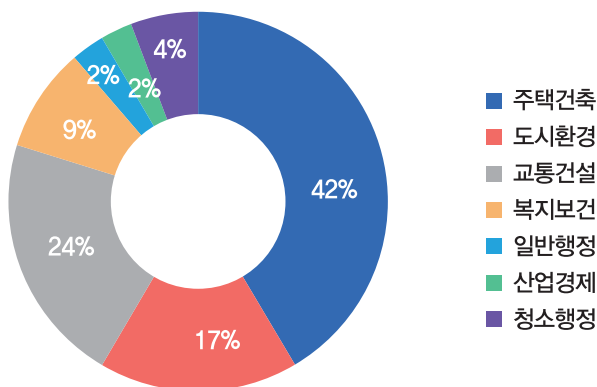
(단위:건)

계	직접조사	이 첩	취 하
192	14	167	11

■ 민원 분야별 현황

(단위:건)

계	주택 건축	도시 환경	교통 건설	복지 보건	일반 행정	산업 경제	청소 행정
192	81	32	46	17	4	5	7



■ 조사 결과 유형별 현황

(단위:건)

계	시정요구	권고	의견표명	조정	불인용	심의종결
14	-	-	14	-	-	-

■ 분야별 자문 처리 현황

(단위:건)

분야	계	일반행정	복지보건	도시환경	주택건축	기타
계	39	12	2	6	6	13
법 률	17	7	2	2	2	4
기 술	22	5	0	4	4	9

■ 직접조사 민원 목록

연번	민원명	조치유형
1	통학로 인도설치 요청	의견표명
2	환기구를 통한 음식점 연기·냄새 민원	의견표명
3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의견표명
4	00동 담장 복구 요구 민원	의견표명
5	00동 신축건물 진입도로 관련 민원	의견표명
6	00마트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 민원	의견표명
7	00마트 먹거리 상인 고충민원	의견표명
8	00초교 담장앞 불법시설물 철거요청	의견표명
9	00동 골목길 계단 경사로 설치 요청	의견표명
10	00동 상가·다세대주택신축관련민원	의견표명
11	00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진출입로옆 조경관리 민원	의견표명
12	수목관련 민원 업무조정	의견표명
13	00동 빗물받이 공사 등으로 인한 피해주장 민원	의견표명
14	00동 하수도 공사로 인한 주택피해 주장 민원	의견표명

■ 검토 민원 목록

연번	민원요지	관련 부서
1	공사차량으로 인한 피해	감사담당관
2	인접대지 공사 가설물로 인한 통행 어려움	건축과
3	목줄없는 강아지 민원	지역경제과
4	○○동 신축공사 민원	건축과
5	○○동 ◇◇-◇ 신축건물 관련	건축과
6	○○ ◇◇연립 앞 주차단속	교통지도과
7	민원 신속처리 요청	건축과
8	○○동 ◇◇-◇ 건축불허 요청	건축과
9	○○동 ◇◇-◇ 건축 관련	건축과
10	○○동 ◇◇-◇ 부지 건물 공사 반대	건축과
11	○○동 ◇◇-◇ 개발공사 결사반대!	건축과
12	○○동 ◇◇-◇ 신축건물 관련	건축과
13	○○동 ◇◇-◇ 신축 고층건물 건설 결사반대!	건축과
14	○○동 ◇◇-◇ 신축 고층건물 결사반대	건축과
15	○○동 ◇◇-◇ 신축 고층건물 건설 결사반대	건축과
16	○○동 ◇◇-◇ 건축 불가	건축과
17	○○동 ◇◇-◇부지의 건축허가 불허 요청	건축과
18	○○동 ◇◇-◇ 건축 반대	건축과
19	○○동 ◇◇-◇ 아파트 건축 반대	건축과
20	○○동 ◇◇-◇ 건축불가	건축과
21	○○동 ◇◇-◇ 고층아파트 신축공사허가 결사반대	건축과
22	○○동 ◇◇-◇ 건축 결사반대	건축과
23	○○동 ◇◇-◇ 건축불가	건축과
24	조망권이 생명권이다	건축과
25	○○동 ◇◇-◇ 건축불허	건축과
26	○○동 ◇◇-◇ 건축 반대	건축과
27	○○동 ◇◇-◇ 신축공사 중지 요청	건축과

연번	민원요지	관련 부서
28	○○동 ◇◇-◇ 건축불허	건축과
29	○○동 ◇◇-◇ 건축 불허	건축과
30	○○동 ◇◇-◇ 건축불허 요청	건축과
31	○○동 ◇◇-◇ 건축 당장 중단 요청	건축과
32	○○동 ◇◇-◇ 건축중단 요구	건축과
33	○○동 ◇◇-◇ 공사를 중단시켜야 하는 이유	건축과
34	○○동 ◇◇-◇ 건축중단 요청	건축과
35	○○동 ◇◇-◇ 건설허가 불허 요청	건축과
36	일조권을 침해하는 ○○○동 ◇◇-◇ 건설허가 불허 요청	건축과
37	○○동 ◇◇-◇ 건축반대	건축과
38	○○동 ◇◇-◇ 건축심사, 승인 제한 요청	건축과
39	○○동 ◇◇-◇ 건축승인 반대	건축과
40	○○동 ◇◇-◇ 건설 중단 요청	건축과
41	○○동 ◇◇-◇ 신축 결사반대	건축과
42	신축빌라 공사 피해 민원접수	건축과
43	버스정류장 명칭 변경 요청	교통행정과
44	마포 □□□공사장 관련	주택과
45	○○동 ◇◇-◇ 신축공사 절대반대	건축과
46	○○동 ◇◇-◇ 개발관련 문제	건축과
47	○○동 ◇◇-◇ 철저한 경관 심의 요청	건축과
48	경의선 책거리 광고배너 제거 요청	도시안전과
49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관련	건강증진과
50	건물 건축허가 심의 시 엄격한 법 적용 요청	건축과
51	상습 주차위반 단속 요청	교통지도과
52	□□유수지 공원관리 고충	공원녹지과
53	전동킥보드 문제	교통행정과
54	자전거와 충돌 관련	교통행정과

연번	민원요지	관련 부서
55	불법식품 영업과 음식물 무단투기 관련	위생과
56	입주자대표회의 자료 공개 거부 관련	주택과
57	경의선숲길 공원 밤 10시 이후 음주행위	서부공원녹지사업소
58	◇◇동 트럭 상인 소음문제	건설관리과
59	입주자대표회의 자료 공개 거부 관련	주택과
60	◇◇동 건물 철거 소음관련	건축과
61	이륜차 불법주차 해결 요청	마포경찰서
62	건물 공사 소음 관련	건축과
63	베란다 불법 건축물 관련	도시안전과
64	상가물건 통로 점유 시정조치 요청	건설관리과
65	◇◇동 ○○○ 입대위와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카페 폐쇄	주택과
66	공사소음 관련	환경과
67	공사소음 관련	건축과
68	공사소음 관련	건축과
69	◇◇초등학교 근처 보도블럭 위 오토바이 통행 관련	마포경찰서
70	주거지역 내 불법소각 민원	청소행정과
71	마포구청역 부근 오피스텔 공사 소음 문제	건축과, 환경과
72	주거지역 폐기물 불법소각 관련	청소행정과
73	이대역 인근 부동산 덧문설치로 인한 통행불편	도시안전과, 건설관리과
74	공사 민원건(가로등)	도로과
75	공사 민원건(가로등)	도로과
76	마포구청역 부근 오피스텔 공사소음	건축과, 환경과
77	마포구청역 부근 오피스텔 공사 시간 조정요청	건축과
78	생활체육시설공원 나무로 인한 일조권 피해, 배수구 막힘	공원녹지과
79	도로 내에 있는 맨홀뚜껑 소음 조치 요청	서울서부수도사업소
80	일요일 공사 제한 요청	건축과
81	낙상 구간 보도정비 요청	건축과

연번	민원요지	관련 부서
82	서울화력발전소 애견 목줄 미착용 단속 요청	지역경제과
83	건물 철거 후 폐허가 된 공터 청결 문제	아현동
84	하수구 방역 요청	보건행정과, 치수과
85	건물간 소음 공해	환경과
86	카페에서 나는 소음 문제	위생과, 건강증진과
87	공사현장 소음 먼지 관련	환경과
88	개인 건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관련	청소행정과
89	인접대지 공사차량 전도에 따른 손괴 보상	건축과
90	보건소 이상반응 대응부서의 팀장, 담당자 응대관련	보건행정과
91	배수구 옆 수리요청	치수과
92	마포구청역 출구 표시 문제	서울교통공사
93	배수로 수리요청건 관련	치수과
94	수색역골다리 관련(상암으로가는골다리)	도로과
95	집 앞 신축공사 후 지하실에 물이 차오름	건축과
96	공사장 소음신고	환경과
97	합정역 홍대입구역 공사 기한 관련	서울시서비스정책과
98	재개발구역 신축공사 사업시행인가 관련	도시계획과
99	공사장 소음신고 관련	환경과
100	○○○○ 0, 0단지 구름다리 보수공사 요청	도로과
101	생태연못 수리 요청	공원녹지과
102	담배꽂초 문제	건강증진과, 청소행정과
103	관광과 직원 관련 민원	관광과
104	하수도 악취 문제	보건행정과, 치수과
105	법인서류 인감증명서 등 무인발급기 구형 내 설치 요청	자치행정과
106	담배꽂초 문제	청소행정과, 건강증진과
107	소음 공해 처리 요청	환경과
108	수색역골다리 관련(상암으로 가는 골다리)	도로과

연번	민원요지	관련 부서
109	호텔부지 공사로 건물 진동 발생 관련	건축과
110	◇◇아파트 관리소의 주민요청 거부 관련	주택과
111	집 앞 신축공사 후 지하실에 물이 차오름	건축과
112	집 앞 신축공사 후 지하실에 물이 차오름	건축과
113	집 앞 신축공사 후 지하실에 물이 차오름	건축과
114	집 앞 신축공사 후 지하실에 물이 차오름	건축과
115	집 앞 신축공사 후 지하실에 물이 차오름	건축과
116	○○동 00-00 리모델링 공사현장 우수관 도로앞 매설관련	치수과
117	지하층 하수역류 관련	도로과
118	연락처 삭제요청	위생과
119	지속적인 소음 발생 관련	위생과
120	옆집 공사로 사생활침해, 공사소음 등 민원	건축과
121	아파트청소차 기계 소음 관련	청소행정과
122	가좌역 철도 건널목 신호음 관련 민원	한국철도공사
123	소음관련 민원	환경과
124	아파트 청소차 기계 소음	청소행정과
125	버스정류장 금연 안내요청	건강증진과
126	소음관련 민원	환경과
127	반려견 관련 민원	지역경제과
128	건물 공사로 진동 발생	건축과
129	○○동 ◇◇-◇번지 신축건물 결사반대	건축과
130	밤10~12시 공사소음	서울시설공단
131	전봇대 전등 교체 요청	도로과
132	마포08버스 민원	교통지도과
133	코로나 자가격리자 안내 미비	보건행정과
134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교통지도과
135	가로등 밝기 관련	도로과

연번	민원요지	관련 부서
136	불법 옥외광고물 신고 및 수거요청	도시안전과
137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에스컬레이터 관련	한국철도공사
138	새벽 공사소음 민원	건축과
139	공사 소음 및 공사 시작시간 민원	건축과
140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 방역수칙 관련	건강증진과, 청소행정과
141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경의선 관련	한국철도공사
142	○○동 ◇◇아파트 임대위 및 관리소 관련	주택과
143	마포새빛문화숲 공원 반려견 관련	공원녹지과, 지역경제과
144	건축 소음 민원	환경과
145	홍대입구역 앞 대형현수막 관련	서대문구청
146	마포 16버스 관련 민원	교통지도과
147	마포구청역 교차로 교통신호위반 카메라 설치요청	마포경찰서
148	◇◇동 자율방범대 부당한 운영	자치행정과
149	망원역 지하철계단 미끄럼방지턱 부착 요구	서울교통공사
150	건설 소음민원	환경과
151	합정역인근 골목길관련 민원	건축과
152	홍대입구역사거리 전광판 철거요청	도시안전과
153	마을버스 06번 관련	교통지도과
154	보행로 확보 후 공사 실시 요청	건축과
155	◇◇중 정문 횡단보도 설치	교통행정과
156	경의선숲길 보행자 우선권 확보 요청	도로과
157	마포구 ○○○ 소음관련	환경과
158	마포역 3번 출구 공원 금연요청	건강증진과
159	목공방 기계소음 관련	환경과
160	외부스피커 소음 공해	위생과, 환경과
161	밤 늦은시간 작업으로 인한 소음	환경과
162	공사소음 민원	환경과

연번	민원요지	관련 부서
163	철거공사 진동 민원	환경과
164	공사소음, 먼지 민원	환경과
165	마포평생학습관 방만운영 고발	마포평생학습관
166	마포16번 민원	교통지도과
167	대형 덤프트럭 주차 금지 요청	교통지도과

02 정례회의

대표 ombudsman 주재 하에 고충민원의 원인과 내용, 양측의 주장과 판단 근거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갈등 해소와 조정 및 중재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 운영주기 : 주 1회 개최(필요 시 수시 회의)
- 참석대상 : ombudsman, 민원인, 관계부서 등
- 기 능
 - 고충민원 조사 여부 및 담당 ombudsman 지정
 - 고충민원 조사결과 공유, 논의 등 처리방향을 전원합의제로 의결
 - 주요 반복민원 검토, 규정 주요 현안 공유
 - 청렴계약 감시 · 평가 점검, 검토
 - 관련부서 및 민원인 의견청취, 현장 조사 등



● 운영현황: 총54회 개최

구 분	주요안건
제1회 정례회의 (2021. 1. 6.)	· 2020년 옴부즈만 운영 자체평가 · 2021년 옴부즈만 운영 방향 논의
제2차 정례회의 (2021. 1. 13.)	· ○○동 통학로 인도 설치요청 민원 · 중앙선 황색 점선 변경 요청 민원
제3차 정례회의 (2021. 1. 20.)	· 2020년 고충민원 처리 현장 사후점검 3건
제4차 정례회의 (2021. 1. 25.)	· ○○동 통학로 인도 설치 요청 민원 검토
제5차 정례회의 (2021. 1. 29.)	· 사유지간 대지경계 침범 · 점유로 인한 갈등 민원검토 · 2020년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서 발간 논의
제6차 정례회의 (2021. 2. 5.)	· ○○동 통학로 인도 설치 요청 민원 검토 · 2020년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서 발간 논의
제7차 정례회의 (2021. 2. 10.)	· 신축건물 위법사항 검토 · ○○동 통학로 인도 설치 요청 민원 · ○○동 건축허가 불허 요청 민원 · 2020년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서 발간 논의
제8차 정례회의 (2021. 2. 15.)	· ○○동 통학로 인도 설치 요청 민원 · 2020년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서 발간 논의
제9차 정례회의 (2021. 2. 24.)	· 버스정류장 명칭 변경 옴부즈만 게시판 민원 · 2020년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서 초안 검토
제10차 정례회의 (2021. 3. 3.)	· '2021년 청렴계약 감시 · 평가 운영 계획' 검토
제11차 정례회의 (2021. 3. 10.)	· '반복 · 고질민원 조정 및 중재 계획' 검토
제12차 정례회의 (2021. 3. 18.)	· 식당 환기구 통한 연기 · 냄새로 인한 고충민원 · 청렴계약 감시 · 평가 – 마포구민체육센터 불량장 증축공사 등
제13차 정례회의 (2021. 3. 24.)	· 청렴계약 감시 · 평가 – 2040 마포구 기후위기 대응계획, 마포투어 버스구매 · 생활체육과 부서 자문 – 공공용지 교환계약서 검토
제14차 정례회의 (2021. 3. 29.)	· 환기구 통한 음식점 연기 · 냄새 고충민원 · ◎◎동 도로점용 주장 건축 민원 · ◎◎유수지 공원 관리 요구 민원
제15차 정례회의 (2021. 3. 31.)	· 환기구 통한 음식점 연기 · 냄새 고충민원 · ◎◎동 도로점용 주장 건축 민원 · ◎◎동 ○○○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구 분	주요안건
제16차 정례회의 (2021. 4. 5.)	· ○○○동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 노인장애인과 부서 자문 - 노인복지시설 임대료미상환 논의 · ○○○시장 상인 및 ○○○마트 직원 집단 고충민원 사항
제17차 정례회의 (2021. 4. 9.)	· ○○○동 신축건물 도로점용 주장 민원 · ○○○시장 ○○마트 상인 고충민원 · 노인장애인과 부서 자문 - 경로당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제18차 정례회의 (2021. 4. 13.)	· ○○○시장 ○○마트 근로자 고용승계 고충민원 · ○○○동 담장 복구 요구 고충민원
제19차 정례회의 (2021. 4. 20.)	· ○○○동 담장 복구 요구 고충민원 · ○○동 신축건물 도로점용 주장 고충민원 · 청렴계약 감시·평가- 성산지역 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 망원1동 골목길 재생 환경 개선 공사
제20차 정례회의 (2021. 4. 30.)	· ○○동 신축건물 진입도로 관련 고충민원 검토 · 청렴계약 감시·평가 - 스마트 안전도시를 위한 도로하부 공동탐사 용역, 2021년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2021년 마포구 사회조사 용역, 업무자동화 서비스 개발용역
제21차 정례회의 (2021. 5. 7.)	· ○○○시장 ○○마트 먹거리 상인 고충민원 검토 · 지역경제과 부서 자문 - 전자상거래법 위반주장 해당업체 행정처분 요구민원 · 청렴계약 감시·평가 -관내 보도블럭 유지보수 공사, 월드컵로 가로등 개량공사, 모래내로 가로등 개량공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구매
제22차 정례회의 (2021. 5. 11.)	· ○○○동 신축건물 통행로 관련 민원 의결안 고충민원 검토 · 청렴계약 감시·평가 - 관내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관내 보도블럭 유지보수 공사,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제23차 정례회의 (2021. 5. 21.)	· 청렴계약 감시·평가 - 성미산 무장애 숲길 조성, 상암산 등산로 보수정비, 상암산 유아숲체험원 운영 용역, 마포구립도서관 통신보안장비 유지보수 용역, 마포구립도서관 상호대차 및 타관반납 운반 용역 · 아동청년과 부서 자문 - 우리동네키움센터 용도변경
제24차 정례회의 (2021. 5. 26.)	· ○○○동 사유지 간 대지경계선 침범관련 고충민원 · 청렴계약 감시·평가- 2020~2021년 마포구 CCTV 통합유지보수용역, 2021년 마포구 CCTV 관제용역, 2021년 구민정보화 교육 운영용역
제25차 정례회의 (2021. 6. 2.)	· ○○○동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주택 균열 고충민원 · 청렴계약 감시·평가 - 2021 성산근린공원 보수정비, 성산근린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설계용역, 2021년 마포구 웹서비스 통합유지보수용역, 2021년 행정전산장비 구매보급, IT 운영센터 노후장비 교체, 2021~2022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용역
제26차 정례회의 (2021. 6. 9.)	· ○○○동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주택 균열 고충민원
제27차 정례회의 (2021. 6. 17.)	· ○○○동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주택 균열 고충민원 · ○○동 외벽공사로 인한 피해 민원 고충민원

구 분	주요안건
제28차 정례회의 (2021. 6. 22.)	· ○○○동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주택 균열 고충민원 · ○○○동 도로 경사로 설치 요청 고충민원
제29차 정례회의 (2021. 6. 30.)	· ○○○동 건축허가취소 항의 고충민원 · ○○○초 담장 앞 점유시설물 철거 고충민원 · ○○○동 지적도 오류 주장 고충민원 · 청렴자문위원회 회의
제30차 정례회의 (2021. 7. 6.)	· ○○○초 담장 앞 점유시설물 철거 고충민원
제31차 정례회의 (2021. 7. 15.)	· ○○○초 담장앞 점유시설물 철거 고충민원 의결서 작성 · ○○○동 계단 경사로 설치 고충민원 의결서 작성 · ○○○동 하수관로 공사로 인한 주택 균열 고충민원
제32차 정례회의 (2021. 7. 21.)	· 교통지도과 부서 자문 - ○○○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상부 수목관리 민원
제33차 정례회의 (2021. 7. 28.)	· ○○○동 통학로 인도설치 요청 고충민원 · 건축과 부서 자문 - ○○○동 상가 · 다세대 주택 신축관련 민원 의결서 작성
제34차 정례회의 (2021. 8. 6.)	· ○○○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안전대책 마련 고충민원
제35차 정례회의 (2021. 8. 12.)	· ○○○동 하수관로 공사로 인한 주택균열 고충민원 · ○○○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안전대책 마련 고충민원
제36차 정례회의 (2021. 8. 18.)	·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부서자문 - 수목관련 민원 업무조정 · 청렴계약 감시 · 평가 - 매봉산 무장애숲길 조성, 성미산 수목갱신 및 생태환경 개선사업, 노후 정보보안 시스템 교체, 다목적(방범) CCTV 구축
제37차 정례회의 (2021. 8. 25.)	·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부서자문 - 수목관련 민원 업무조정 · 청렴계약 감시 · 평가 - 마포구립작은도서관 도서구매, 스마트도서관 설치운영, 마포중앙도서관 도서구입
제38차 정례회의 (2021. 9. 1.)	· 청렴계약 감시 · 평가 - 자전거시실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21~22년 마포구 제설작업 용역, 제설제 구매 · 수목관련 민원 업무조정 의결서 작성
제39차 정례회의 (2021. 9. 9.)	· ○○○동 하수관로공사로 인한 피해 주장 고충민원
제40차 정례회의 (2021. 9. 16.)	· ○○○동 빗물받이 공사로 인한 피해 주장 고충민원
제41차 정례회의 (2021. 9. 23.)	· ○○○동 하수관로 공사로 인한 주택균열 고충민원 · ○○○동 빗물받이 공사로 인한 피해 주장 고충민원
제42차 정례회의 (2021. 9. 29.)	· ○○○동 하수관로 공사로 인한 주택균열 고충민원 · ○○○동 빗물받이 공사로 인한 피해 주장 고충민원

구 분	주요안건
제43차 정례회의 (2021. 10. 6.)	· ○○○동 빗물받이 공사로 인한 피해 주장 고충민원
제44차 정례회의 (2021. 10. 13.)	· ○○○동 빗물받이 공사로 인한 피해 주장 고충민원
제45차 정례회의 (2021. 10. 22.)	· ○○○동 빗물받이 공사로 인한 피해 주장 고충민원 · ○○○동 주상복합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민원상담 · ○○○동 건축신고 효력상실 무효 주장 민원상담
제46차 정례회의 (2021. 10. 25.)	· ○○○동 주상복합건축물 용도변경 민원상담 · 청렴계약 감시·평가 - 향동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흥제초록숲길 정비사업
제47차 정례회의 (2021. 11. 3.)	· 교통지도과 부서 자문 - ○○○동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용도폐지 요구 · ○○○동 주상복합건축물 용도변경 민원상담 · 하수관로 공사로 인한 주택균열 고충민원
제48차 정례회의 (2021. 11. 17.)	· 공동주택 승강기 유지보수계약 관련 법령 검토 요청 고충민원
제49차 정례회의 (2021. 11. 24.)	· 공동주택 승강기 유지보수계약 관련 법령 검토요청 고충민원
제50차 정례회의 (2021. 12. 1.)	·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법률 자문 고충상담
제51차 정례회의 (2021. 12. 9.)	· 민사법률 고충상담 · 구청 지상주차장 노면개선 요청 고충민원
제52차 정례회의 (2021. 12. 14.)	· 공동주택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고충민원 · 옴부즈만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대한 의견 검토
제53차 정례회의 (2021. 12. 22.)	· 법률자문 상담민원
제54차 정례회의 (2021. 12. 29.)	·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 고충민원

03 현장조사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특성과 행정 여건 등 정책적 요소를 고려한 현장 중심의 고충처리를 도모하고, 청렴계약 감시·평가 대상 사업 검토시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함



▶ 빗물받이 공사로 기동균열 주장 민원



▶ ○○초 담장 앞 무단점유물 철거요청 민원



▶ ○○초 부근 보행안전대책 요청민원



▶ ○○중학교 지하주차장 관련민원



▶ ○○동 주택 균열 민원



▶ 공사로 인한 주택피해 민원

04 청렴계약 감시 · 평가

청렴계약 감시 · 평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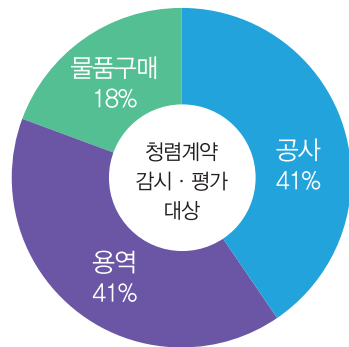
총 공사비가 3억원 이상의 공사,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또는 물품구매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21년 추진한 공공사업 중 총 44건을 감시 · 평가하였다. 사업 담당자 면담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공사업의 발주부터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사업단계별 감시 ·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의 타당성, 합법성, 예산의 낭비요소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 청렴계약 감시 · 평가 대상

(단위: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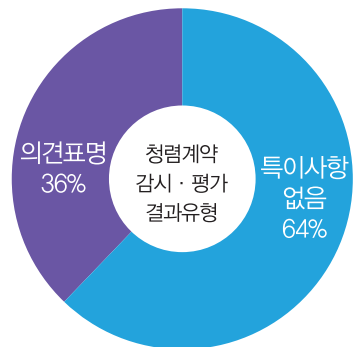
계	구 분		
	공 사	용 역	물품구매
44	18	18	8



■ 청렴계약 감시 · 평가 결과유형

(단위:건)

계	구 분			
	특이사항 없음	의견 표명	시정 요구	권고
44	28	16	-	-



■ 청렴계약 감시 · 평가 목록

연번	사업명	부서명	검토결과
1	마포구민체육센터 볼링장 및 관련시설 설계용역, 증축공사	생활체육과	의견표명
2	서울북합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관련 공사,감리	생활체육과	의견표명
3	2040 기후위기 대응계획	환경과	의견표명
4	마포투어버스 구매	관광과	의견표명
5	성산지역 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	도시계획과	특이사항없음
6	망원1동 골목길재생 환경개선 공사	도시계획과	의견표명
7	스마트 안전도시를 위한 도로하부 공동탐사 용역	도로과	특이사항없음
8	2021년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	도로과	특이사항없음
9	업무 자동화 서비스 개발 용역	기획예산과	의견표명
10	2021년 마포구 사회조사 용역	기획예산과	특이사항없음
11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도로과	의견표명
12	월드컵로 가로등 개량공사	도로과	특이사항없음
13	모래내로 가로등 개량공사	도로과	특이사항없음
14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구매	교통지도과	특이사항없음
15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도로과	특이사항없음
16	관내 보도블럭 유지보수 공사	도로과	특이사항없음
17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공원녹지과	의견표명
18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공원녹지과	특이사항없음
19	성미산 무장애숲길 조성	공원녹지과	의견표명
20	상암산 등산로 보수정비	공원녹지과	의견표명
21	상암산 유아숲 체험원 운영 용역	공원녹지과	특이사항없음
22	마포구립도서관 통신보안장비 유지보수 용역	마포중앙도서관	특이사항없음

연번	사업명	부서명	검토결과
23	마포구립도서관 상호대차 및 타관반납 운반 용역	마포중앙도서관	의견표명
24	2020~2021년 마포구 CCTV 통합유지보수용역	전산정보과	특이사항없음
25	2021년 마포구 CCTV 관제 용역	전산정보과	특이사항없음
26	2021년 구민정보화 교육 운영 용역	전산정보과	의견표명
27	2021 성산근린공원 보수정비	공원녹지과	특이사항없음
28	성산근린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설계 용역	공원녹지과	의견표명
29	2021 마포구 웹서비스 통합유지보수 용역	전산정보과	특이사항없음
30	2021년 행정전산장비 구매보급	전산정보과	특이사항없음
31	IT운영센터 노후장비 교체	전산정보과	특이사항없음
32	2021~2022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용역	전산정보과	특이사항없음
33	매봉산 무장애숲길 조성	공원녹지과	특이사항없음
34	성미산 수종갱신 및 생태환경 개선사업	공원녹지과	의견표명
35	노후 정보보안 시스템 교체	전산정보과	특이사항없음
36	다목적(방범) CCTV 구축	전산정보과	특이사항없음
37	스마트 도서관 설치 운영	마포중앙도서관	의견표명
38	마포구립작은도서관 도서구매	마포중앙도서관	특이사항없음
39	마포중앙도서관 도서구입	마포중앙도서관	특이사항없음
40	자전거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교통행정과	의견표명
41	2021~2022년 제설작업 용역	도로과	특이사항없음
42	제설제 구매	도로과	특이사항없음
43	향동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공원녹지과	특이사항없음
44	홍제초록숲길 정비사업	공원녹지과	특이사항없음

05 청렴자문위원회 운영

- 마포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17년 2월 부터 마포구 옴부즈만을 위원으로 구성한 마포구 청렴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2021년 청렴자문위원회에서는 마포구의 청탁금지법 운영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여러 활동들을 공유, 검토하고 업무추진비 공개범위 확대 및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 앞으로도 마포구 옴부즈만은 청렴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조직내 청렴 공감대 형성과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청렴자문위원회 개최 2021. 6. 30.



청렴자문위원회 심의 사항

-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공개에 관한 사항 검토
- 그 밖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06 기타 활동



마포구 옴부즈만 길기현 건축사
국민권익의 날 기념 옴부즈만 분야 유공자 표창 수상 2021. 02. 27.



2021년 제1회 국민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참석 2021. 03. 18.

시민일보 2021년 8월 18일 수요일 005면 서울

복합민원 해결사 '마포구 읍부즈맨' 호응

열리초교 주변 안전 민원 해결 전문가들 고충민원 처리 눈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 읍부즈맨이 여러 기관이 연계된 복합민원을 해결하는 등 '구민의 대리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말 지역내 열리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구 읍부즈맨에게 초등학교 주변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현재 열리초 정문을 기준으로 300m 이내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인근 마포GS 자이아파트(열리동) 테니스장 사

거리부터 백범로 28길 22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미지정 구간이라 이 길을 따라 학교로 통학하는 아이들은 많지만 보행하기에 위험하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해당 구간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이륜차가 과속주행하는 경우가 빈번해 어린이 대상 안전사고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읍부즈맨은 구 관련 부서와 사전 면담을 통해 해당 상황에 대한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6일 열리초 학부모, 도로과 및 교통행정과 담당자, 마포경찰서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덕표 기자 hongdp@siminilbo.co.kr

아시아일보 2021년 8월 18일 수요일 005면 사회

마포구 읍부즈맨 '구민 대리인' 역할 톡톡

열리초등학교 주변 보행환경 개선... 여러 기관 연계된 복합민원 해결

마포구 읍부즈맨이 여러 기관이 연계된 복합민원을 해결하는 등 '구민의 대리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화제다.

지난 7월 말 마포구 열리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마포구 읍부즈맨에게 초등학교 주변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현재 열리초등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300m 이내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인근 마포GS 자이아파트(열리동) 테니스장 사거리부터 백범로 28길 22까지는 어린이보

호구역 미지정 구간이라 이 길을 따라 학교로 통학하는 아이들은 많지만 보행하기에 위험하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해당 구간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과속주행하는 경우가 빈번해 어린이 대상 안전사고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불안을 느낀 열리초등학교 학부모와 주변 학원에 어린 자녀를 보내는 주민들이 읍부즈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읍부즈맨은 마포구 관련 부서와 사전 면담을 실시해 해당 상황에 대한 사실은

한편 과속 방지턱 등을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더불어, 열리초등학교 주변 독막로에 속도제한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교통경찰이 수시로 과속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번 민원은 구청과 경찰서, 두 기관의 협력이 필요해 주민이 해결하기에는 복잡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읍부즈맨이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며 민원 접수 및 처리 과정을 간소화했고, 마포구 관련 부서를 비롯해 두 기관 간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내

는데 기여해 문제 해결을 도왔다.

행정·건축·법률 등 분야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마포구 읍부즈맨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지난 2015년 출범했다. 지금까지 해결이 어려운 고충민원 71건을 처리해 불합리한 행정제도개선과 주민 간의 이해대립 중재 등 고충 해결에 앞장 서 왔다.

주민을 위해 직접 나섰던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월에 열린 읍부즈맨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여하는 읍부즈맨 분야 공로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읍부즈맨과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포구청 누리집에 접속해 고충민원 온라인신청을 하거나 읍부즈맨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용수 기자

市政新聞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023면 시정종합

마포구 읍부즈맨 '고충민원 해결사'

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 구청·경찰서 합의 이끌어

마포구(구청장 유동균) 읍부즈맨이 여러 기관이 연계된 복합민원을 해결하는 등 '구민의 대리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화제다.

지난 7월 말 열리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마포구 읍부즈맨에게 초등학교 주변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현재 열리초등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300m 이내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인근 마포GS자이아파트(열리동) 테니스장 사거리부터 백범로 28길 22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미지정 구간이라, 이 길을 따라 학교로 통학하는 아이들은 많지만 보행하기에 위험하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해당 구간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과속 주행하는 경우가 빈번해 어린이 대상 안전사고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불안을 느낀 열리초등학교 학부모와 주변 학원에 어린 자녀를 보내는 주민들이 읍부즈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읍부즈맨은 마포구 관련 부서와 사전 면담을 실시해 해당 상황에 대한 사실은

파악한 후, 지난 6일 열리초등학교 학부모, 도로과 및 교통행정과 담당자, 마포경찰서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와 현장 방문 끝에 구는 해당 구간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또한 이륜차의 이동이 잦은 백범로 28길 22와 23 사이 도로에는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노면을 표시하고, 과속 방지턱 등을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더불어 열리초등학교 주변 독막로에 속도제한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교통경찰이 수시로 과속 운전 이륜차 단속에 나서서 등 난폭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번 민원은 구청과 경찰서, 두 기관의 협력이 필요해 주민이 해결하기에는 복잡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읍부즈맨이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며 민원 접수 및 처리 과정을 간소화했고, 마포구 관련 부서를 비롯해 두 기관 간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내

2021년 8월 18일

III.

2021

주요사례

1. 고충민원 조사처리
 2. 부서자문 조사처리
 3. 청렴계약 감시 · 평가
-



III.

2021

주요사례

01 고충민원 조사처리



◆◆초 통학로 인도 설치 요청

민원개요

○○로에서 ○○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차량의 양방향 통행과 ○○○아파트에서 ○○초등학교를 통학하는 학생 및 주민들의 통행으로 교통혼잡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도로에 통학로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

- 신 청 인 :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
- 피신청인 : 도로과
- 협조부서 : 교통행정과

조사경위

- 2021. 1. 6. 고충 민원 접수
- 2021. 1. 13. 읍부즈만, 도로과 담당 주무관 면담
- 2021. 1. 20. 읍부즈만 현장 조사
- 2021. 2. 5. 도로과 담당 주무관 면담
- 2021. 2. 10. 교통행정과 담당 주무관 면담
- 2021. 2. 15. 도로과 담당 주무관, 교통행정과 담당 주무관 면담

판단

- 민원요청한 도로는 ○○로와 ○○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평소 차량의 양방향 통행으로 보행자와의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도로임
- 통학로 설치와 독막로 횡단보도 설치는 도로과와 교통행정과에서 서로 협조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도로의 양쪽 건물에는 각각 건물주차장에 차량이 진입하고 있어 보행자의 보행을 고려하여 한쪽 도로로 통학로 설치 필요

조치의견 : 의견표명

통학로 인도 설치 요청은 ○○로와 ○○로를 연결하는 양방향 차량통행과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통행 및 ○○초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곳으로 도로과에서는 도로여건에 맞는 보도를 설치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로 및 ○○초교 인근 횡단보도 설치를 추진하여 향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과 이용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학로 인도를 설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환기구를 통한 음식점 연기·냄새 민원

민원개요

00동 소재 일식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꼬치구이 작업으로 냄새와 연기가 옥상 굴뚝에서 심하게 발생하고 있어 냄새와 연기로 생활이 매우 불편함

- 신 청 인 : 익명
- 피신청인 : 위생과
- 관련부서 : 환경과

추진경과

- 2021. 3. 8. 고충 민원 접수
- 2021. 3. 18. 옴부즈만과 관련부서(위생과, 환경과) 합동회의
- 2021. 3. 23. 옴부즈만과 관련부서(위생과, 환경과) 합동현장 조사
- 2021. 3. 29. 옴부즈만과 관련부서(위생과, 환경과) 합동회의
- 2021. 3. 31. 업주 면담

판단

- 음식점이 ◎◎ 및 ◎◎◎◎ 인근 꼬치구이 전문 맛집으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음식점의 냄새 및 연기는 법령상 강제할 수 없는 상태임
- 민원인의 계속 반복되는 민원 발생으로 업소가 자발적으로 민원해결 방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업소 행정지도 실시 필요
- 업주가 민원해결방안에 대한 의지는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행정적인 지원대책에 대한 방안을 안내

조치의견 : 의견표명

◆◆동 소재 음식점 옥상에서 발생하는 꼬치구이 냄새 및 연기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 업주가 자체 민원해결을 위한 시설을 설치 약속한바 위생과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확인하고, 환경과에서는 냄새 및 연기관련 민원에 대한 법령 건의를 통해 단속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향후 유사한 민원에 대비하여 영세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도 고려하여 안내해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동 담장 복구 요구 민원

민원개요

민원인 옆집 ○○동 000-00 신축을 위하여 가옥을 철거한 후 민원인의 담장을 다시 세워 주는 조건으로 담장을 헐었으나 기존 약속과 다르게 미관 및 방법에 취약한 가림막(철조망 등)으로 설치하고 사용검사이후 담장을 세워주겠다고 주장하여 민원을 제기함

- 신 청 인 : ○○○○
- 주관부서 : 건축과

추진경과

- 2021. 4. 8. 고충 민원 접수(직접 방문)
- 2021. 4. 13. 옴부즈만과 민원인과의 면담
- 2021. 4. 13. 옴부즈만 현장 방문
- 2021. 4. 20. 옴부즈만과 건축과 담당자 협의

판단

- 신축공사를 위해 종전 건물과 담장의 철거로 민원인의 주택이 노출되어 있어 미관상, 방법상 안전한 휀스등의 설치가 필요함
- 신축공사에 대비하여 임시 경량가설물(EGI 휀스등)을 설치하고 향후 신축건물 사용승인 전 경계 담장을 설치하여 분쟁을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가설물을 1주일 이내로 신속히 설치하는 것이 또 다른 공사민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조치의견 : 의견표명

민원인의 인접건물에서 건축물 신축을 위한 경계담장 철거로 건물노출 및 타인 출입으로 방법상 문제가 예상되므로 새로운 담장을 사용승인시 설치하더라도 미관 및 방법상 안전한 경량가설물(EGI휀스 등)을 신축건물 착공 전 신속하게 설치하여 향후 공사로 인한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00동 신축건물 진입도로 관련 민원

민원개요

민원인1은 건축허가시 현황도로를 고려하지 않아 주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사중지 및 시정 지시를 할 것을 요청하였고, 민원인2는 이미 건축허가가 났으며,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1의 입장만 고려한 건축중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 민 원 인1 : 주민대표 ○○○
- 민 원 인2 : 건축주 ***
- 주관부서 : 건축과

추진경과

- 2021. 2. 9. 민원인1 민원제기
- 2021. 2. 10. 옴부즈만과 건축과 민원회의
- 2021. 3. 29. 옴부즈만과 건축과 민원회의
- 2021. 3. 31. 옴부즈만과 민원인1, 건축주, 건축과 의견청취
- 2021. 4. 5. 옴부즈만과 건축과 민원회의
- 2021. 4. 9. 옴부즈만과 민원인1,2와 동시 면담
- 2021. 4. 13. 옴부즈만과 건축과 합동현장 방문
- 2021. 4. 14. 건축주 민원제출
- 2021. 4. 20. 옴부즈만과 건축과 민원회의
- 2021. 4. 30. 옴부즈만과 건축과 민원회의
- 2021. 5. 7. 옴부즈만과 민원인2 면담

판단

- 옴부즈만은 2021. 3. 31. 당사자 진정민원인들의 의견청취 결과와 이후 건축현장을 방문하고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 및 제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조정방안을 제시하니 본 진정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함

조치의견 : 의견표명

○○동 ◇◇-◇외 2필지 대지의 신축공사는 30m도로인 ○○ ◇◇-◇으로부터 진정민원인1(◎◎◎)의 ○○동 ◇◇-◇필지를 포함하여 ○○동 ◇◇-◇외 2 필지(통로)에 접하여 건축 허가되었으나, 신축건물의 기준 건축선을 종전 건물의 건축선(현 보도 블록끝선)을 기준으로하여 1층 부터 기존 신축도면을 설계변경하여 공사하고 이에 따른 통로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동 ◇◇-◇◇ 빗물받이 등 공사로 인한 피해 주장 민원

민원개요

민원인이 거주하는 주택앞 도로(○○로○○길 ○)에 구청에서 횡배수관 설치 및 보수 공사와 도로포장 공사로 인한 도로침하로 대문 기둥 및 담장 균열이 발생하여 피해를 보고 있어 정확한 원인을 구청에서 규명하여 피해를 해결해 주길 바랍

- 민 원 인 : ○○○○
- 주관부서 : 치수과
- 관련부서 : 도로과
- 협조부서 : 건축과, 도시안전과, 재무과

추진경과

- 2021. 9. 8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민원 이송
- 2021. 9. 9 : 옴부즈만, 치수과 민원검토
- 2021. 9. 16 : 합동현장 조사(옴부즈만, 치수과, 도로과)
- 2021. 9. 23 : 민원인과 합동 면담(옴부즈만, 치수과, 도로과)
- 2021. 9. 29 : 옴부즈만, 치수과, 도로과 도로안전과 합동회의
- 2021. 10. 6 : 옴부즈만, 치수과, 도로과 합동회의
- 2021. 10. 13 : 옴부즈만, 치수과 합동회의

판단

- 횡단 빗물받이 공사를 시행한 치수과와 도로상 아스콘 포장공사를 시행한 도로과의 의견과 현장 합동점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민원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대문기둥 상단부 크랙 및 기울어짐 현상과 담장 하부 콘크리트 균열의 직접적인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음
- 구 자체로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하려 했으나 대상 건물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민원인이 주장하는 피해를 영조물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처리하고자 했으나 이 또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는 사고로 보상불가로 결정이 되었음

- 치수과에서 물감검사를 이용한 누수확인을 시행하였으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도로과에서도 동공이 발견되지 않아 추가 조치가 어렵다는 의견을 종합하면 현재로서 민원인이 주장하는 피해원인에 부합하는 문제는 발견하기 어려움

조치의견 : 의견표명

○○동 이면도로 하수도 및 도로포장 공사로 인해 대문 및 담장 피해를 주장하는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의 의견과 현장합동점검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민원인에게 ‘마포구에 시행한 하수도 및 도로포장 공사가 피해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피해처리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민원인이 공사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국가배상제도(서울고등검찰청)나 민사재판을 통해 신청할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로 치수과 및 도로과는 부서에서 시공하는 유사 공사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전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확보하고 공사중 발생한 피해는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민원을 해결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현장조사 모습



00동 하수도 공사로 인한 주택피해 주장 민원

민원개요

민원인이 거주하는 주택앞 도로(○○로○안길)에 마포구청에서 시행한 하수관로 이설공사 및 하자보수 공사로 인해 주택 및 대문과 계단에 균열이 발생하여 피해를 보고 있어 공사를 시행한 구청에서 이에 대한 피해를 해결해 주길 바람.

- 민 원 인 : ○○○
- 주관부서 : 치수과
- 접수기관 : 마포구의회

추진경과

- 2021. 6. 2 : 옴부즈만과 민원인 면담
- 2021. 6. 9 : 합동현장조사(옴부즈만, 민원인, 치수과)
- 2021. 6. 17 : 합동민원상담(옴부즈만, 치수과, 시공사)
- 2021. 6. 22 : 합동민원상담(옴부즈만, 민원인, 치수과, 시공사)
- 2021. 7. 15 : 합동민원상담(옴부즈만, 민원인, 치수과, 시공사)
- 2021. 8. 12 : 옴부즈만, 치수과, 도로과 합동면담
- 2021. 9. 14 : 옴부즈만, 민원인, 치수과 합동면담
- 2021. 9. 23 : 옴부즈만, 치수과 면담
- 2021. 10. 13 : 옴부즈만 민원인 면담
- 2021. 10. 29 : 옴부즈만, 민원인 면담
- 2021. 11. 3 : 옴부즈만, 민원인, 시공사 합동회의

판단

- 하수관로 공사를 시행한 치수과의 의견과 현장 합동점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하수관로 공사가 민원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건물과 대문 및 담장 하부 균열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음

- 민원인과 시공사간 건축물 피해안전진단시 공동부담으로 확인코자 했으나 안전진단시 현재 건축물피해상태만 평가가 가능하여 원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담금액을 조정하여 합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당사자 합의 조건을 명시하여 Ом부즈만 입회하에 지급각서를 작성하고 본 민원은 민사, 형사 및 행정적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조정함

조치의견 : 의견표명

○○동 이면도로상 하수관로 이설공사로 주택 및 대문과 담장에 피해를 주장하는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의 의견과 현장합동점검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하수관로 이설공사가 주택피해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민원인과 시공사간 합의를 통해 민원을 종결하기로 결정하여 Ом부즈만 입회하에 당사자가 '위로금 지급각서'에 의한 합의각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향후 치수과에서는 유사 공사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전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확보하고 공사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동 골목길 경사로 설치요청 민원

민원개요

민원인이 전기충전용 원동기장치를 이용하여 본인 집에서 전기 충전을 해야 하는데 골목길이 계단으로 되어 있어 집까지 이동시 불편하므로 골목길 보수 포장공사시 자전거나 원동기장치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골목길에 경사로 설치를 요망함

- 민 원 인 : ○○○○
- 주관부서 : 도로과

추진경과

- 2021. 6. 22. 민원인 옴부즈만 게시판에 민원제기
- 2021. 6. 22. 옴부즈만 민원 검토
- 2021. 6. 30. 옴부즈만 ○○동 현장 방문
- 2021. 7. 13. 옴부즈만과 도로과 민원회의
- 2021. 7. 14. 옴부즈만과 경사로 설치 안건 처리

판단

- 옴부즈만은 진정 민원인의 의견과 도로과 의견 및 현장방문 결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니 본 진정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조치의견 : 의견표명

골목길 보수 포장공사로 시행한 마포구 ○○ 일대 도로는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인근 주민들의 자전거나 전동스쿠터 이동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기존 계단 일부를 이용하여 장비들이 이동가능 하도록 계단별로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02 부서자문 조사처리



임대보증금 청구의 소 관련

민원개요

마포구가 ○○동 소재 건물의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하였으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피고 임대인이 제시한 합의안이 향후 예측되는 소송의 결과에 비추어 수용하기에 적정한지를 옴부즈만에게 자문을 요청한 사안임.

- 원고(임차인) : 마포구(노인장애인과)
- 피고(임대인) : ■■■■

소송민원 추진경과

- 2020. 11.16 임대보증금 청구 소장 접수
- 2021. 1. 21 부동산 명도 완료
- 2021. 4. 5 옴부즈만과 임대보증금관련 상담
- 2021. 4. 9. 옴부즈만과 소송건에 대한 자문의뢰

판단

- 원고측은 소취하 조건인 임대보증금과 소송비용(560만원 상당)을 제시하고, 피고가 제기한 합의안은 임대보증금과 400만원임
-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차액금액이 금 160만원으로 소송을 종료하기 위해 피고측의 합의안을 수용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부합하다고 본다

조치의견 : 의견표명

마포구가 경로당으로 사용했던 ○○동 소재 건물반환에 따른 '임대보증금 청구의 소'가 종결될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으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종전 소유자 ○○○가 말기암 환자로 변제능력이 없다면 소송결과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측이 제시한 '임대보증금과 비용 4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안에 대해 원고가 수용할 것을 권고한다.



수목관련 민원 업무조정

민원개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녹지 및 공원이 아닌 도로상 수목과 관련된 일부 민원에 대해 공원녹지과는 도로의 재산관리관인 건설관리과에서 처리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건설관리과에서는 수목처리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어 관련 민원해결이 어려워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민원인에게 두 부서간 업무를 미루는 것으로 인식되어 마포구 민원행정처리에 불신이 야기되고 있어 수목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업무조정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청함

- 주관부서 : 건설관리과(건설행정팀)
- 관련부서 : 공원녹지과(조경팀)

민원 추진 경과

- 2021. 8. 3. 건설관리과 수목관련 민원 업무조정 의뢰
- 2021. 8. 6. 옴부즈만, 건설관리과 담당자, 공원녹지과 담당자 면담
- 2021. 8. 12. 옴부즈만, 건설관리과 팀장, 공원녹지과 팀장 회의
- 2021. 8. 25. 옴부즈만, 건설관리과 팀장, 공원녹지과 팀장 회의

판단

- 우리 옴부즈만은 2021. 8. 3 수목관련 민원 업무조정 의뢰에 따라 공원녹지과와 건설관리과 실무자 및 팀장과의 도시계획시설외 수목관리 업무조정제에 대해 수차례 회의 결과 두 부서간 의견차로 합의 조정할 수 없어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하였음

조치의견 : 의견표명

일부 도로상 수목관련 민원처리방법은 수목전문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수목관리에 대한 전문성, 민원처리의 신속성 및 민원인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할 때 일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지금까지 민원처리 방법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과에 발생하는 추가업무에 따른 인력 및 예산반영 검토가 필요한 바 '마포구 정책협의회에서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표명한다.



○○초교 담장 앞 불법 시설물 철거 요청 민원

민원개요

○○초교에서 노후담장을 헐고 새 담장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담장 앞 불법 점유시설물을 마포구에 철거 요청함에 따라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 옴부즈만에 처리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 사항임

- 주관부서 : 재무과
- 관련부서 : 도시계획과
- 관련기관 : ●●초등학교

민원추진경과

- 2021. 4. 27. 불법 점유시설물 철거 요청(○○초 → 마포구청)
- 2021. 5. 14. 회신공문발송(마포구청 → ○○초)
- 2021. 5. 17. 불법 점유시설물 철거 재요청(○○초 → 마포구청)
- 2021. 6. 7. 재회신 공문 발송(마포구청 → ○○초)
- 2021. 6. 8. 불법 점유시설물 철거 재요청 및 긴급안전조치 요청(○○초 → 마포구청)
- 2021. 6. 30. 재무과에서 옴부즈만에 부서자문 요청
- 2021. 7. 6. 합동 현장방문(재무과장 등 5명, 옴부즈만 3명)
- 2021. 7. 6. 합동 간담회(○○초 교장 등 2명, 재무과장 등 8명)

판단

- 우리 옴부즈만은 2021. 7. 6. 합동 간담회와 현장 방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옴부즈만이 제시한 학교담장 설치에 대한 주문사항을 ○○초교에 통보하여 본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조치의견 : 의견표명

기존 생계형 노점에 대해 강제철거집행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재개발조합에서 사업 추진시 이전하는 것은 장시간 소요되므로 담장을 재설치하기 위해서는 담장 설치공사 주관기관에서 설계후 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교육청의 '자재공법 선정위원회' 자문을 받아 담장 재설치에 알맞은 공법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현장조사 모습



○○동 ○○ 상가/다세대주택 신축관련 민원

민원개요

상가/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반복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 상정하여 의견을 듣고자 함

- 주관부서 : 건축과

민원추진경과

- 2020. 3. 26 2020년 제3차 마포구 건축소위원회 심의(○○동 ◇-◇)
- 2020. 5. 1 건축허가(○○동 ◇-◇ 맞벽건축)
- 2020. 8. 11 착공신고(○○동 ◇-◇)
- 2020. 9. 21 착공신고(○○동 ◇-◇)
- 2020. 9. ~ 민원제기(○○동 ◇-◇ 도로폭 확보 적정여부)
- 2020.12. 22 설계변경(○○동 ◇-◇)
- 2021. 5. 4 사용승인(○○동 ◇-◇)
- 2021. 6. 2 사용승인 접수(○○동 ◇-◇)
- 2021. 7. 1 건축과에서 옴부즈만 상정의뢰
- 2021. 7. 2 옴부즈만 민원검토(옴부즈만, 건축담당)
- 2021. 7. 6 옴부즈만 현장 방문 자료수집
- 2021. 7. 15 건축과 업무 확인(국토부 질의회신)-첨부자료 참조
- 2021. 7. 21 옴부즈만 대법원판례, 국토부 회신자료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검토
- 2021. 7. 28 옴부즈만 의결처리

판단

- 우리 옴부즈만은 2021. 7. 6. 현장 방문과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대법원 1999.2.9, 선고 98두12802 판결) 및 지정고시되지 않은 현황도로(국토교통부 2121.7.13, 2AA-2107-0282453) 질의회신에 따라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 건축선 지정 및 대지안의 공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므로 건축과에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향후 건축허가시 민원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7조(도로의 지정)을 적극 활용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조치의견 : 의견표명

○○동 상가/다세대주택 신축관련 민원에 대해 우리 옴부즈만은 2021. 7. 6. 현장 방문과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대법원 1999.2.9, 선고 98두12802 판결) 및 지정고시되지 않은 현황도로(국토교통부 2121.7.13, 2AA-2107-0282453) 질의회신에 따라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 건축선 지정 및 대지안의 공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므로 건축과에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향후 건축허가시 민원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7조(도로의 지정)을 적극 활용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옆 조경관리 민원

민원개요

지하공영주차장 진출입로 옆 1층 지상부에 조성된 화단 전체구간이 가로수가 매우 무성하여 가지치기를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 마포구청과 ○○중학교간 화단의 관리주체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주무부서인 교통지도과에서 옴부즈만에 처리방안에 대한 부서 자문을 요청한 사항임

- 주관부서 : 교통지도과
- 관련기관 : ○○중학교

민원 추진 경과

- 2021. 6월중 민원인이 응답소, 시설관리공단 및 교육청에 다수민원제기
- 2021. 6. 16. ○○중학교 화단관련 민원협의(서울시 서부교육청 주관)
- 2021. 7. 21. 현장 회의(옴부즈만 3명, 교통지도과 2명, ○○중학교 2명)
- 2021. 7. 29. 옴부즈만 회의
- 2021. 8. 12. 부서 자문에 대한 의결 처리

판단

- 우리 옴부즈만은 2021. 7. 21. ○○중학교 및 구청 교통지도과 합동 간담회와 현장 방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하공영주차장 진출입로 옆 1층 지상부에 조성된 화단의 관리주체는 ‘○○중학교’ 라고 판단한다.
- 다만 마포구청장과 ○○중학교장은 “○○중학교 지하주차장 운영·관리에 관한 협약서” 제4조에 따라 지하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할 수 있으므로 조경시설을 유지관리 비용분담을 협의하여 본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조치의견 : 의견표명

우리 옴부즈만은 ○○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진출입로 옆 1층 지상부에 조성된 화단의 관리주체는 2021. 7. 21. ○○중학교 및 구청 교통지도과 합동 간담회와 현장 방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학교"라고 판단한다.

다만, 마포구청장과 ○○중학교장은 "○○중학교 지하주차장 운영·관리에 관한 협약서" 제4조에 따라 지하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할 수 있으므로 조경시설을 유지관리 비용분담을 협의하여 본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03 청렴계약 감시 · 평가



업무 자동화 서비스 개발 용역

사업개요

마포구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데이터분석을 통하여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업무자동화를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 기 간 : 2021. 7. ~ 2021. 12.
- 규 모 : 단순 · 반복 업무에 대한 업무 자동화서비스 개발
- 사 업 비 : 97,000천원
- 발주방식 : 제한경쟁입찰

평가결과 : 의견표명

- 보안문제를 고려하여 처음부터 많은 업무를 시도하기 보다는 실현가능한 최소한의 업무로 시범 운영하고 점차 확대하도록 할 것



2021년 구민정보화 교육 운영 용역

사업개요

구민의 정보격차 완화 및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 간 : 2021. 1. ~ 2021. 12.
- 규 모 : 총 300강좌 약 6,000명
- 사 업 비 : 금270,500천원
- 계 약 일 : 2020. 12. 30.(착수일 2021. 1. 1.)
- 발주방식 : 제한경쟁입찰

평가결과 : 의견표명

-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교육 프로그램이 많으므로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홍보해주길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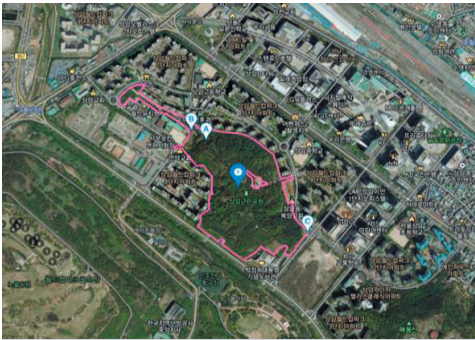


상암산 등산로 보수정비

사업개요

노후된 등산로를 자연소재를 활용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부족한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샛길 폐쇄 등을 통해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 사업기간 : 2021. 2. ~ 2021. 12.
- 사업규모 : 상암산(상암동 1761번지)
- 사업비 : 1,000,000천원
- 발주방식 : 제한경쟁입찰



위치도



현황사진

평가결과 : 의견표명

- 등산로 입구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로 등산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므로 CCTV 추가설치 검토할 것
- 관광과 사업인 마포투어버스 관광코스에 등산로를 넣는 것 검토 바람



성산근린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설계 용역

사업개요

성산근린공원 입구에 위치한 노후된 경로당을 철거하고, 경로당, 생태학습관, 화장실 기능이 있는 「복합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여, 공원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경관개선

- 기 간 : 2021. 7. ~ 2021. 12.
- 규 모 :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용역
- 사 업 비 : 금100,000천원
- 장 소 : 성산동 산11-73일대
- 계 약 일 : 2020. 12. 30.(착수일 2021. 1. 1.)
- 발주방식 : 제한경쟁입찰

평가결과 : 의견표명

- 복합 커뮤니티센터 실내보다 실외에 생태학습실을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커뮤니티센터 조성 시작 전과 조성 중 변경 사항이 있을 시 주민에게 사전설명하는 과정 필요



성미산 수종갱신 및 생태환경 개선사업

사업개요

성미산 내 아까시 등 위험수목, 고사목 등을 제거하고 미세먼지 저감 수목 등으로 수종 갱신을 추진하여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자 함

- 기 간 : 2021.2. ~ 2021.11.
- 규 모 : 8ha
- 장 소 : 성산동 산 11-64번지 등 일대
- 사 업 비 : 금500,000천원
- 발주방식 : 제한경쟁입찰
- 주요내용 : 위험수목, 고사목 등 제거, 수종 갱신



성미산 훼손 현황



위험수목(아까시 나무) 현황

평가결과 : 의견표명

- 사업 반대하는 주민단체에게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여 설득할 것
- 법률 등 상담이 필요할 경우 옴부즈만에 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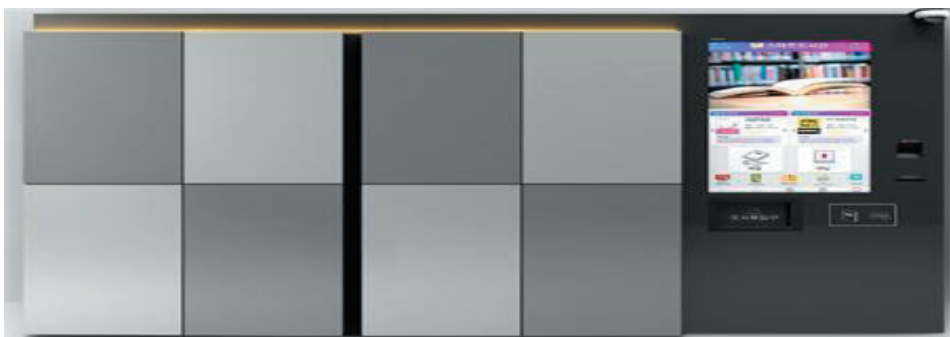


스마트 도서관 설치 운영

사업개요

지하철역사에 무인 대출반납이 가능한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하여 구민 독서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기 간 : 2021. 6. ~ 2021. 12.
- 규 모 : 무인 스마트도서관 1대
- 장 소 : 합정역사 내
- 사 업 비 : 금130,700천원
- 발주방식 : 조달구매



무인 스마트도서관

평가결과 : 의견표명

- 무인도서관에 대한 CCTV 송출화면을 유지관리 업체만 볼 수 있으니 담당자도 수시로 확인 가능하도록 휴대전화 등에 연계하여 점검 바람

IV.

참고 자료

1.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4.04.24.] (제정) 2014.04.24 조례 제96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공공사업"이란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4. "청렴계약"이란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당사자 간에 뇌물 등을 주고받을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계약의 해지 등의 제재를 받겠다는 특수조건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의 구성·직무 등

제3조(옴부즈만 구성 등) ①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할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④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옴부즈만이 꺾워된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4조(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2.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3.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상시적 청렴계약 감시·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

제5조(직무관할) 옴부즈만이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마포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마포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3. 마포구의 사무위탁기관(마포구의 위탁사무에 한함)

제6조(옴부즈만 상호간의 관계) 옴부즈만은 각각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합의제로 운영한다.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되는 사항
3. 본인이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신분보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옴부즈만 직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10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은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이하 “신청인 대표”라 한다)가 옴부즈만에게 신청한다.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마포구 및 그 소속기관에 설명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구청장 소속하의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마포구 및 그 소속기관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5조(고충민원의 반려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반려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의회에 관한 사항

6.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7.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반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대표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를 안내할 수 있다.

제1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구청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5조 각 호에 따른 직무관할 대상기관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옴부즈만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상황의 보고)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4장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

제21조(청렴계약 감시·평가 대상) 옴부즈만이 실시하는 청렴계약 감시·평가(이하 “감시·평가”라 한다) 대상은 공공사업의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을 포함하며, 그 구체적인 대상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료제출 및 요구) ① 감시·평가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감시·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사전에 옴부즈만에게 심의자료와 일정을 제출해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관련 부서장에게 감시·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운영계획의 수립) 옴부즈만은 매년 감시·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 활동범위를 정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장 운영지원 등

제24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961호, 2014.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4.10.16.] (제정) 2014.10.16 규칙 제64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표옴부즈만) 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고, 옴부즈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옴부즈만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옴부즈만이 미리 지정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3조(고충민원 신청·접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 완료 및 기한 연장 통지) 옴부즈만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하거나 그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련 기관 및 신청인 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서약)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제시) 옴부즈만이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표의 옴부즈만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권고 및 의견 표명 방법) 조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시정·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관련 법령·제도·정책·처분 등의 현황 및 문제점

3. 시정 · 제도개선 권고, 의견 표명 내용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청렴계약 감시 · 평가 대상범위) 조례 제21조에 따른 청렴계약 감시 · 평가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총 공사비가 3억원 이상의 공사
2.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또는 물품구매

제9조(청렴계약 감시 · 평가 자료제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련 부서장은 감시 · 평가 대상목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제10조(수당지급) 조례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옴부즈만 활동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일 1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제11조(공인) ①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규칙 제641호, 2014.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3., 2016. 3. 29., 2017. 4. 18., 2019. 4. 16., 2020. 12. 29.>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 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8.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9.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당의 책무) ①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삭제 <2021. 5. 18.>

[시행일: 2022. 5. 19.] 제7조의2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 이권개입 · 알선 · 청탁행위의 금지 · 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공직자의 생활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와 공익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6. 9.>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신설 2020. 6. 9.>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 25.>

1. 국민의 권리보호 ·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 · 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 · 홍보 계획의 수립 · 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 25.>

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2. 17.>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 5. 28.>

⑤ 위원이 꺾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규정에 위반한 경우
-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 4. 1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제25조에 따른 파견 공무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 4. 16.>

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8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 4.>

1.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3. 제51조제1항에 따른 감사의회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2022. 7. 5.] 제20조

제2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3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 · 예규 · 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지방공단 내부규정
-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 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 · 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 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 · 보안관찰처분 · 보호처분 · 보호관찰처분 · 보호감호처분 · 치료감호처분 ·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 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 · 알선 · 조정 ·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 · 결정 · 재결 · 화해 · 조정 ·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제12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삭제 〈2019. 4. 16.〉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83조의2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9. 4. 16.>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 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 · 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신청인이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한 고충민원을 둘 이상의 권익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16.]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 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 ④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이송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⑤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민원이 이송된 때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4. 16.>

[제목개정 2019. 4. 16.]

제44조(합의의 권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 4. 17.>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 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결정의 통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의 의뢰) ①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②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등의 감독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그 처리결과를 감사를 의뢰한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4.>

[시행일: 2022. 7. 5.] 제51조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53조(공표)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50조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① 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자”라 한다)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19. 4. 16.)

제57조의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58조(신고의 방법)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의 문서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1. 4.]

[시행일: 2022. 7. 5.] 제58조의2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7.>

⑤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9. 4. 16., 2020. 12. 29., 2021. 8. 17.>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성급(將星級) 장교

6. 국회의원

⑥ 제5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29., 2021. 8. 17.>

⑦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2021. 8. 17.>

⑧ 위원회는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9. 4. 16., 2021. 8. 17.>

[시행일: 2022. 2. 18.] 제59조

제60조(조사결과와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② 제5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2. 1. 4.>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즉시 신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④ 신고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위원회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⑤ 위원회는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⑥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시행일: 2022. 7. 5.] 제60조

제61조(재정신청) ① 제59조제5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2020. 12. 29., 2021. 8. 17.>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때, 제5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때에는 수사의뢰한 날부터 3개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8. 17.>
[시행일: 2022. 2. 18.] 제61조

제61조의2(이의신청) 제5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본조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2. 2. 18.] 제61조의2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4. 16.]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분보장등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은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고,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과 그가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이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등에게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1.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2. 신고자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3. 각하결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의 권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를 받은 경우
5. 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신분보장등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각하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신분보장신청인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

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소속기관장등에게 충분한 소명(疏明)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종전 제62조의2는 제62조의5로 이동 <2019. 4. 16.>]

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이 경우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4.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7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가·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할 것을 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공직자인 신분보장신청인이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및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장 등 인사조치 요청과 관계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받은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신청인과 소속기관장등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2조의4(행정소송의 제기 등) ①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2조의5(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4. 16.>

[본조신설 2016. 3. 29.]

[제목개정 2019. 4. 16.]

[제62조의2에서 이동 <2019. 4. 16.>]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조치결정”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으로, “보호조치”는 “신분보장등조치”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소속기관장등”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신고한 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 4. 16.>

제63조의2(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 권고나 화해안에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해안의 작성, 화해조서의 작성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0. 31.]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6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4. 16.>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③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 1. 4.>

④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16., 2022. 1. 4.>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또는 신고등으로 인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시행일: 2022. 7. 5.] 제66조

제66조의2(협조의 요청) 위원회는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밖의 단체 등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7조(준용규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58조의2는 제3호의 경우에만 준용하되,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 3. 29., 2017. 10. 31., 2019. 4. 16., 2022. 1. 4.>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4.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시행일: 2022. 7. 5.] 제67조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9. 4. 16.>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2. 1. 4.>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2022. 1. 4.>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⑥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6., 2022. 1. 4.>

⑦ 제3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 및 협조자”로 본다. <신설 2019. 4. 16., 2022. 1. 4.>

[제목개정 2019. 4. 16.]

[시행일: 2022. 7. 5.] 제68조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4. 16.>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4. 16.>

1.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 4. 16.>

④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9. 4. 16.>

1. 위원회 소속으로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회계·감정평가,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16.>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받은 사람은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3.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제7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등이 지급된 경우
5. 그 밖에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환 또는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목개정 2022. 1. 4.]

[시행일: 2022. 7. 5.] 제70조의2

제71조(보상금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2022. 1. 4.>

② 위원회는 제6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포상금·보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포상금·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③ 위원회는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④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기관은 포상금·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포상금·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보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보상금 등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보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보상금 등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보상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4.>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기관은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4.>

[제목개정 2022. 1. 4.]

[시행일: 2022. 7. 5.] 제71조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2022. 1.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1. 1. 12.>

[시행일: 2022. 7. 5.] 제72조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제78조(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9조(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0조(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도교육청평가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81조의3(국민권의 향상에 관한 포상)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권익 보호·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3. 29., 2022. 1. 4.>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삭제 <2022.1.4>
 - 바. 삭제 <2022.1.4>
 -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2. 1. 4.>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보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2022. 1. 4.>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들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4.>

[제목개정 2016. 3. 29.]

[시행일: 2022. 7. 5.] 제82조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25조에 따른 파견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감사원 또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8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7., 2014. 5. 28.>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86조삭제 <2021. 5. 18.>
[시행일: 2022. 5. 19.] 제86조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4. 16., 2019. 12. 10.>

제89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비위면직자등이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2. 1. 4.>

[제목개정 2022. 1. 4.]

[시행일: 2022. 7. 5.] 제89조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3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10.>

[전문개정 2019. 4. 16.]

제91조(과태료) ① 제62조의2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4. 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2019. 4. 16.>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 4. 16.>

부칙 <제18715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기관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기관이 위원회로부터 송부받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조금 지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부패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부패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감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비위면직자등이 된 사람은 제8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1 마포구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서

발 행 일 2022년 2월

발 행 인 마포구 옴부즈만

주 소 마포구 월드컵로 212 8층

전 화 02-3153-8182

홈페이지 www.mapo.go.kr
